

2020. 9. 15.(화) 10:00

제28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제 3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2020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9월 3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19년 하반기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화원읍 천내리 일원이 선정됨.

나. 본 사업내용 중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거점시설을 신축하여 주민 활동의 중심지로 조성하고자 함.

4. 관련법령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5. 주요골자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공동체 거점시설 신축】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1,000년의 화원, 다시 꽃피다!

- 위 치 : 화원읍 천내리 1, 2리 일원

- 면 적 : 150,669m²
- 총사업비 : 241.5억 원(국비 115, 시비 57.5, 군비 57.5, 기금 11.5)
- 사업기간 : 2020. ~ 2023.(4년간)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	① 주민 커뮤니티 교류공간 ‘소통’	2,220
	② 예술놀이 오픈 캠퍼스 ‘봄꿈’	4,380
	합 계	6,600
공공복지 서비스 활성화	③ 상상 어울림센터 ‘비상’	9,140
	④ 실버 커뮤니티 공간 ‘나들이’	3,000
	합 계	12,140
골목상권 활성화	⑤ 화원 새싹점포, 으뜸상품 판매센터	620
	⑥ 걷고 싶은 화원 시장길	850
	합 계	1,470
생활 인프라 개선	⑦ 살기좋은 ‘화원’ 만들기	3,940
	합 계	3,940
총 합 계		24,150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공동체 거점시설 신축】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 ~ 2023. 5.
- 위 치 : 화원읍 천내리 441-3, 443-3번지
- 규 모 : 부지면적 637m², 건축연면적 1,200m², 건물동수 1동(지상 4층)
- 주요시설 : 공유 부엌, 카페, 방과 후 예술놀이,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등
- ※ 규모 및 주요시설은 실시설계 결과 반영 예정
- 사 업 비: 66억 원(국비 33, 시비 16.5, 군비 16.5)
- 토지 및 건물 매입 19.5억, 건축공사 41억, 설계/감리 3.1억
- 프로그램 사업 2.4억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m², 천원)

구 분		당 초			금 회			계		
		건수 (필지, 동)	수량	금액	건수 (필지, 동)	수량	금액	건수 (필지, 동)	수량	금액
취 득	계	12 (47)	84,161	80,118,168	3 (4)	2,211	5,476,322	15 (51)	86,372	85,594,490
	1.매입	3 (33)	35,328	3,661,104	1 (2)	637	745,510	4 (35)	35,965	4,406,614
	건물	2 (3)	582.68	237,788	1 (1)	374.13	80,812	3 (4)	956.81	318,600
	토지	1 (3)	22,332	8,907,463				1 (3)	22,332	8,907,463
	건물	1 (3)	4,294.39	1,937,813				1 (3)	4,294.39	1,937,813
	토지									
처 분	3.기타									
	건물	5 (5)	21,623.75	65,374,000	1 (1)	1,200	4,650,000	6 (6)	22,823.75	70,024,000
	계	2 (61)	98,536	2,879,384				2 (61)	98,536	2,879,384
	4.매각	1 (3)	4,660	185,934				1 (3)	4,660	185,934
	건물									
	5.양여									
	6.교환	1 (58)	93,876	2,693,450				1 (58)	93,876	2,693,450
	토지									

2020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 당 초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	답	답	원풍읍 원교리	718-2	1,319	1,319	330,000,000	달성군 재활용품 선별장 확장이전 2020. 8.	달성군 재활용품 선별장 확장이전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도의리 289	곽병근	2019.12 의회의결
2	답	장	원풍읍 원교리	720	1,098	1,098	461,160,000			경상북도 칠곡군 해관읍 석전리 771-4	김형인	
3 (건물)	답	장	원풍읍 원교리	720	258.8	258.8	15,948,000			"	"	
4	잡	장	원풍읍 원교리	721	2,747	2,747	1,153,740,000			"	"	
5 (건물)	잡	장	원풍읍 원교리	721	240	240	3,840,000			"	"	
6	도	도	원풍읍 원교리	1749-33	2,127	450	189,000,000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상 어울림센터 신축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상 어울림센터 신축	건설부	국유지	달성군
7 (건물)	대	대	화원읍 천내리	850-2 860-2	2031.75	2031.75	8,660,000,000 (사업비)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주	소	
8	대	대	화원읍	성산리	412-1	21,835	8,380,273,000	대구 경찰특공대 이전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2020. 3.	대구 경찰청	국유지		2019.12. 의회의결
9 (건물)	대	대	화원읍	성산리	412-1	3,926	1,506,787,286					
10	대	대	다사읍	매곡리	719-19	295	515,070,000					
11 (건물)	대	대	다사읍	매곡리	719-19	242.54	423,474,840					
12	천	천	화원읍	명곡리	939-11	202	12,120,000					
13 (건물)	천	천	화원읍	명곡리	939-11	125.85	7,551,000	호텔 아펠리아 별관 증축 2022.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14 (건물)	잡	대	유기읍	용리	31-2	5,000	19,874,000,000 (사업비)					
15 (건물)	대	대	현풍읍	증리	506	11,680	29,500,000,000 (사업비)	2022. 6.	달성군 교육문화 복지센터 건립	"	"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6	임	임	회원읍	성산리	253	172	10,904,800	2020. 6. 회원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2019.12. 의회의결	달성군 회원읍 구리3길 8-8	전성배	
17	대	대	회원읍	성산리	257	258	58,462,800			"	전성배	
18	임	임	회원읍	성산리	241	76	1,216,000			달성군 회원읍 성산리 245	전병득	
19	묘	묘	회원읍	성산리	258	979	67,551,000			달성군 회원읍 구리3길 8-8	전성배	
20	임	임	회원읍	성산리	242	155	2,619,500			달성군 회원읍 성산리 245	전병득	
21	임	임	회원읍	성산리	259	258	4,850,400			달성군 회원읍 구리3길 8-8	전성배	
22	묘	묘	회원읍	성산리	264	245	16,905,000			"	전성배	
23	임	임	회원읍	성산리	260	198	3,801,600			달성군 회원읍 성산리 245	전병득	
24	묘	묘	회원읍	성산리	265	598	41,262,000			달성군 회원읍 구리3길 8-8	전성배	
25	임	임	회원읍	성산리	261	169	3,075,800			달성군 회원읍 성산리 245	전병득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화원읍	성산리	주 소					성 명		
26	임	임	화원읍	성산리	263	1,045	19,019,000	2020. 6. 회원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달성군 화원읍 구라3길 8-8	전성배	2019.12. 의회의결
27	임	임	화원읍	성산리	산46	1,983	38,073,600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245	전병득	
28	임	임	화원읍	성산리	262	684	12,448,800				"	전병득	
29	대	대	화원읍	성산리	272	1,421	388,927,700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271 달성군 하빈면 묘리 692 대구 북구 산격동 981 대구 달서구 상인동 1185 대구 북구 서변동 694 대구 북구 서변동 1101 대구 북구 동변동 263 대구 수성구 봉무동 180 대구 수성구 만촌동 139 대구 수성구 만촌동 204 다사읍 문산리 269 가창면 대일리 387 가창면 우록리 549 가창면 상원리 278 다사읍 세천리 959 대구 달서구 이곡동 419 대구 북구 공산동 1007	배진호 박노균 서희규 우하충 구성서 이혜춘 구경희 최진환 전병근 하동규 윤안 서병찬 김상익 김두한 구경희 허노학 유효봉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화원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대구 남구 남산동 362 대구 중구 대신동 512 대구 달서구 상인동 1140 대구 남구 남산동 407 대구 북구 서변동 885 대구 북구 서변동 857 다사읍 세천리 105 다사읍 영양리 624	윤창한 신춘길 우하갑 서대교 이봉래 이민희 구인회 정영원	2019.12. 의회의결
30	임	임	화원읍	성산리	산47	5,157	94,373,100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290	전의이 씨금구 당공파 중중	
31	전	전	화원읍	성산리	279	701	18,226,000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290	전의이 씨금구 당공파 중중	
32	임	임	화원읍	성산리	산50-4	198	3,564,000			중구 산격동 1040	김용민	
33	임	임	화원읍	성산리	산50-3	99	1,782,000			중구 산격동 1040	김용민	
34	전	전	화원읍	구라리	834	506	35,420,000			달성군 화원읍 구라1길 77-24	백경자	
35	임	임	화원읍	구라리	산99-2	198	4,197,600			대구 동구 신암동 200-1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박종석 박영호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회원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581-28 송원맨션 3동 1205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28 송원맨션 1동 90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212,704동 1306호(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김용희 박재용	2019.12. 의회의결
36	전	전	회원읍	구라리	835	1,210	53,040,000			달성군 회원읍 구라1길 77-24	백경자	
37	전	전	회원읍	구라리	830	1,021	71,470,000	2020. 6.		대구 달서구 송현동 1991 동서장관연립주택 108-109	임영목	
38	전	전	회원읍	구라리	829-1	403	22,285,900			달성군 회원읍 천내리 36-8	서숙이	
39	임	임	회원읍	구라리	산99-1	7,772	170,764,000			대구 동구 신암동 200-1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581-28 송원맨션 3동 1205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28 송원맨션 1동 90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212,704동 1306호(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박중석 박영호 김용희 박재용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40	임	임	화원읍	구라리	산98-2	992	24,601,600	2020. 6.	화원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화원읍 천내리 117 보성아파트 106동 303호	서풍교	2019.12. 의회의결
41	전	전	화원읍	구라리	829	85	4,700,500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36-8	서숙이	
42	임	임	화원읍	구라리	산98-1	198	4,910,400			달성군 화원읍 화원로2길 26	이무현	
43	임	임	화원읍	구라리	산96	3,373	70,158,400			대구 중구 서야동 29 대구 중구 서야동 29 대구 중구 서야동 29	백남길 백남옥 백남혁	
44	대	대	화원읍	천내리	851	328	278,373,600	2020. 2.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버커뮤니티 공간신축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522길 73	한경애	2020.2. 의회의결
45 (건물)	대	대	화원읍	천내리	851	83.88	218,000,000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46 (건물)	대	대	화원읍	천내리	851	562	1,840,000,000 (사업비)	2021. 10.				
47 (건물)	답	답	다사읍	달천리	132-1 135 137-1 138	2,350	5,500,000,000 (사업비)	2022. 5.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 건설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2020.5. 의회의결

2020년도 공유재산 처분대상 재산목록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처분 시기	처분 사유	처분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	임	임	옥포읍	기세리	산30-13	4,186	7,241,780	2020. 3. 대구 경찰특공대 이전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2019.12. 의회의결	
2	임	임	옥포읍	기세리	산30-14	598	1,076,400			"		"
3	임	임	옥포읍	기세리	산31-1	8,628	15,357,840			"		"
4	임	임	옥포읍	기세리	산31-2	496	882,880			"		"
5	임	임	옥포읍	기세리	산31-3	793	1,467,050			"		"
6	전	전	옥포읍	기세리	1-1	529	54,063,800			"		"
7	전	전	옥포읍	기세리	1-3	954	86,337,000			"		"
8	답	답	옥포읍	기세리	2-1	1,183	120,902,600			"		"
9	전	전	옥포읍	기세리	3	1,831	165,705,500			"		"
10	전	전	옥포읍	기세리	4-1	1,402	177,633,400			"		"
11	전	전	옥포읍	기세리	5	1,302	117,831,000			"		"
12	전	전	옥포읍	기세리	6	608	55,024,000			"		"
13	전	전	옥포읍	기세리	7	1,220	110,410,000			"		"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처분 시기	처분 사유	처분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4	전	전	옥포읍	기세리	8	889	80,454,500	2019.12. 의회의결	대구 경찰특공대 이전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15	전	전	옥포읍	기세리	9-1	569	75,904,600			"	"	
16	전	전	옥포읍	기세리	11-1	506	67,500,400			"	"	
17	전	전	옥포읍	기세리	12	565	51,132,500			"	"	
18	전	전	옥포읍	기세리	13	1,177	93,218,400			"	"	
19	전	전	옥포읍	기세리	14	621	49,183,200			"	"	
20	전	전	옥포읍	기세리	15	377	29,858,400			"	"	
21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24-1	3,471	20,583,030			"	"	
22	임	임	화원읍	설화리	124-7	496	3,035,520			"	"	
23	임	임	화원읍	설화리	124-9	298	777,780			"	"	
24	임	임	화원읍	설화리	124-10	1,289	3,364,290			"	"	
25	임	임	화원읍	설화리	124-15	384	810,240			"	"	
26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24-17	20,383	41,173,660			"	"	
27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24-18	61	128,710			"	"	
28	임	임	화원읍	설화리	산143	6,347	79,337,500			"	"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처분 시기	처분 사유	처분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29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4	2,380	11,781,000	2020. 3. 31. 이전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대구 경찰특공대 이전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대구 달성군 논공음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2019.12. 의회의결
30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5-1	8,132	16,670,600			"	"	
31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5-3	397	837,670			"	"	
32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5-4	793	1,704,950			"	"	
33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5-5	3,224	6,931,600			"	"	
34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6	595	3,712,800			"	"	
35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7	1,983	4,263,450			"	"	
36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8-1	1,686	10,318,320			"	"	
37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8-2	1,983	25,382,400			"	"	
38	임	임	회원읍	설화리	산148-2	298	3,814,400			"	"	
39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38-4	161	28,336,000			"	"	
40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39	1,655	202,737,500			"	"	
41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40-1	255	21,471,000			"	"	
42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40-2	836	55,176,000			"	"	
43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40-3	476	40,079,200			"	"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처분 시기	처분 사유	처분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주 소	성 명	
44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40-5	922	78,370,000	대구 경찰특공대 이전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대구 달성군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2019.12. 의회의결	
45	주차장	주차장	회원읍	설화리	840-8	240	64,896,000			"		"
46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42	1,091	12,328,300			"		"
47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43	774	8,746,200			"		"
48	임	임	회원읍	설화리	844	760	8,588,000			"		"
49	전	전	회원읍	설화리	844-1	2,106	46,121,400			"		"
50	대	대	회원읍	설화리	838-2	593	289,146,800			"		"
51	대	대	회원읍	설화리	840	329	127,684,900			"		"
52	대	대	회원읍	설화리	840-6	96	25,958,400			"		"
53	구	구	옥포읍	기세리	1-4	11	995,500			"		"
54	구	구	옥포읍	기세리	1-5	41	3,710,500			"		"
55	구	구	옥포읍	기세리	4-2	116	10,226,500			"		"
56	구	구	옥포읍	기세리	9-2	572	49,865,500			"		"
57	구	구	회원읍	설화리	840-9	95	9,500,000			"		"
58	구	구	회원읍	설화리	841-5	137	13,700,000			"		"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처분 시기	처분 사유	처분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59	답	잡	기창면	상원리	488	1,983	79,121,700	2020. 6.	한국 광혜관리공단 광혜방지사업 부지 매각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2020.5. 의회의결
60	답	잡	기창면	상원리	489	2,175	86,782,500			"	"	"	"	
61	답	잡	기창면	상원리	490	502	20,029,800			"	"	"	"	

2020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 추 가

구분	지 목		재 산 의 포 시		취득 대상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일단의 수 량 (㎡)	소 재 지	주 소					성 명			
총 계			토지(2필지), 건물(2동)		2,211.13	5,476,322,080						
토지	전	장	회원읍 천내리	441-3	562	663,160,000	2020. 9.	회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공동체 거점시설 신축	대구 달성군 회원읍 구라1길 85-14			전병조
토지	답	장	회원읍 천내리	443-3	75	82,350,000			대구 남구 대명동 435-3			전병욱
건물	장	장	회원읍 천내리	441-3	374.13	80,812,080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건물	대	대	회원읍 천내리	441-3 443-3	1,200	4,650,000,000 (사업비)	2023. 5.					신축

1,000년의 화원(花園), 다시 꽃피다!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일원 / 면적: 약 150,669㎡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일원 / 면적: 약 150,669㎡

D-1 살기좋은 '화원' 만들기

대구교도소 후속지 개발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선정지역_기재부)

-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규모 국유지를 문화공원, 교정타운, 도서관 등 문화공간으로 조성
- 주변후속지역 도시재생사업 연계 추진

C-2
전고 심은 화원 시장길

C-1 으뜸상품 판매센터 및 교육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화원공설시장 주차환경 개

A.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

A-2 예술놀이 오픈 캠퍼스 '봄꿈'

D. 생활인프라 개선

D-1 살기좋은 '화원' 만들기

위치도 및 사진대지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공동체 거점시설 신축】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41-3, 443-3번지



Ⅱ. 검토의견

2020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19년 하반기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화원읍 천내리 일원이 선정되어 본 사업내용 중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거점시설을 신축하여 주민 활동의 중심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므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5.29)
 3.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인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8월 27일

2. 제 출 자 : 서도원 의원

3. 제안사유

- 달성군에 거주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운전 문화 확립과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 교육 등(안 제3조 ~ 제4조)
- 고령운전자 운전 표시스티커, 보상금 지급, 반환, 홍보 등(안 제5조 ~ 제9조)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제3조 2항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달성군에 거주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운전 문화 확립과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 ~ 제2조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 제4조 군수의 책무,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 제9조 고령운전자 운전 표시스티커, 보상금 지급, 반환, 홍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하고, “운전면허증”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85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3.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로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해당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및 교재의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운전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운전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운전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6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보상금 지급) ① 군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하고 그 반납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최초 1회에 한해 교통비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제7조 (신청 및 지급) ① 제6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가 되고 제6조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금의 반환) 군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하여 제6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받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9조(홍보)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	----

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 * 신청시 작성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면허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 면허 반납시 ‘모든 종류 (원동기 포함)’ 의 ‘운전면허’ 가 ‘전부 취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_____ (서명 또는 인)

※ 반납 즉시 면허가 취소되고, 한번 취소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취소일 기준 1년 후 다시 취득이 가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_____ (서명 또는 인)

※ 반납한 면허증은 사용하실 수 없으며, 해당 부서에서 즉시 폐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_____ (서명 또는 인)

반납 보상 신청 * 신청시 작성					
교통비 지원신청	보상신청여부	[] 예 [] 아니오	수령자 정보 (예정)	본인 [] 본인외 [] (수령자와의 관계: _____ 수령처명: _____)	
	본인희망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 예 [] 아니오			
보상 수령지 주소		도로명주소 (정확하게 기재)	우편번호() 주 소 :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달 성 군 수 귀 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2. 신청인의 범위 : 고령운전자 본인만 신청 가능 3. 기타(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

개 인 정 보 이 용 · 제 공 동 의 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통합조회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면허번호, 연락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신청 접수·처리	주민등록 말소 전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제3자 이용·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면허반납 처리를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보유기간
경찰청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면허번호, 연락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한 면허상태 조회 및 면허취소 처리	주민등록 말소 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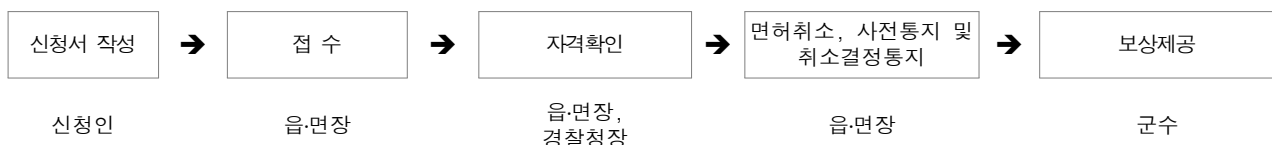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별지 제2호 서식]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년 호

귀하가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희망하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귀하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려 하니, 이의가 있으면 바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연락처	
	주 소			
통지 내용	처분 내용	운전면허 취소		
	의견제출 기한	즉 시 ※ 이의가 있으면 바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읍 면 장

직인

안내전화:

담당자 ○○○

..... 절취선

사전통지 확인서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기한 등을 통지받았고, 본인의 자진반납 의사가 명백하고, 그 요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여 서명·날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달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			
④ 면 허 번 호			
⑤ 행 정 처 분 결 정 내 용	취 소 처 분	년 월 일	
⑥ 사 유	본인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위와 같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결정되어
통지하오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반납한 경우는 제외)

년 월 일

○○ 읍 면 장

인

※ 이의신청방법 안내

1.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라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 이의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포털(www.simpan.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8월 27일

2. 제 출 자 : 이대곤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군수 및 의료인 등의 책무, 군민의 권리와 의무(안 제3조 ~ 제5조)
- 전염병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표본감시, 역학조사, 필수예방접종, 환자관리, 강제처분, 입원통지,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방역조치, 소독 의무 등(안 제6조 ~ 제18조)
- 비밀누설 금지,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19조 ~ 제22조)

5.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 ~ 제2조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 제5조 의료인 등의 책무, 군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 제18조 전염병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표본감시, 역학조사, 필수예방접종, 환자관리, 강제처분, 입원통지,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방역조치, 소독의무에 관한 사항
- 안 제19조 ~ 제22조 비밀누설 금지,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의심자”란 법 제2조제15의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이 조례에 따라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군수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군민은 군수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하는 치료 및 격리조치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감염병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군수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군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군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역학조사 등)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군수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

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받는 자는 허위 또는 거짓증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필수예방접종)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달성군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달성군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제11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군수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조사·진찰을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진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조사거부자를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

⑥ 군수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 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5항에 따른 격리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13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군수는 감염병환자 등이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군수는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5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군수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소독 의무)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예방위원) ① 군수는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군에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군의 인구 2만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0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 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군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21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22조(표창 등)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9월 3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골목형 상점가’ 신설 및 운영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필수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2조(정의) 제2호 ‘상점가’ 추가, 제3호 ‘골목형 상점가’ 신설
제4호 ‘상인’ 정의 추가
- 제25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신설
- 제26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신설
- 제5장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및 운영·관리 규정 신설

5.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골목형 상점가’ 신설 및 운영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필수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2조(정의)에 ‘상점가’ ‘상인’ 추가와 ‘골목형 상점가’ 를 신설
- 안 제25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신설
- 안 제26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신설
- 안 제5장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및 운영·관리 규정 신설에 관한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서를 발급한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토지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상인”이란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6.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시장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25조를 제30조로 하고, 제25조, 제26조 및 제5장(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조건은 군수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26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는 동의 철회서에 날인 또는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군수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및 운영·관리

제2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제2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27조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 및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또는 구역도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그에 관한 청문에 관하여는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2조(정의) 1.(현행과 같음)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토지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상인”이란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 -----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6. ----- ----- ----- -----.
2.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u>시장구역 내에 있는 상인들이</u>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3.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시장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신 설>	제25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조건은 군수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u><신 설></u>	<u>제26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u> ① 법 제3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는 동의 철회서에 날인 또는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군수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u><신 설></u>	<u>제5장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및 운영·관리</u>
<u><신 설></u>	<u>제27조(골목형상점가 지정)</u> ① 군수는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u><신 설></u>	<u>제2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u> 제27조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 및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또는 구역도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신 설></u>	<u>제2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u>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그에 관한 청문에 관하여는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u>제25조(시행규칙) (생략)</u>	<u>제30조(시행규칙)(현행과 같음)</u>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7조의2, 제38조의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 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 “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8.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승인·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10.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1.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 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토지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의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토지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자치단체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9월 3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시설운영과 입주작가의 관리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문화를 제공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창작공간의 기능(안 제4조)
- 달성예술창작공간 운영위원회 설치(안 제5~제6조)
- 입주 예술인에 대한 지원(안 제7조)
- 운영의 위탁 및 지도,감독(안 제8조~제12조)

5.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시설운영과 입주작가의 관리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문화를 제공하기 위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4조 창작공간의 기능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 제6조 달성예술창작공간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입주 예술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 제12조 운영의 위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이하 “창작공간”이라 한다)에 속하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2. “예술인”이란 문화예술에 관한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란 예술인이 창작공간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창작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창작활동
2. 전시실 운영
3.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의 개최
4.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교실 운영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운영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창작공간 입주자 선정 및 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달성예술창작공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 한다.

1. 창작공간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창작공간 입주자 의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창작공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⑥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입주작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창작공간 입주 예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창작활동 지원금

2. 작품집 출간 비용

3. 군수가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지원금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창작공간을 문화·예술적으로 전문적,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창작공간 관리·운영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하여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항에 따라 창작공간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

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다.

-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그 관리·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수탁시설의 운영) ① 수탁자는 창작공간을 운영함에 있어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관련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그 실비용만을 징수한다.

- ② 창작공간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창작공간 기본운영 취지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모든 시설물, 비품,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창작공간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 및 재산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기간은 시설의 위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4.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5. 제4호에 따라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거나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6. 제5호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창작공간시설 사용 및 운영 현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창작공간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술창작공간의 명칭과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예술창작공간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명 칭	위 치
달천예술창작공간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다사로 515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